

의안번호	2217606
의 퇴 인	서미화 의원
회 답 일	2026. 3. 31.
추계번호	26C1539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30조의2 (장애인 가족 지원) 제1항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 1. (신규) 장애인 가족 실태조사 2. (신규) 장애인 가족 권리 옹호 및 위기 가정 지원 3. (기존 유사) 장애인 가족 방문 돌봄 지원 4. (기존 유사) 장애인 가족 심리상담(동료상담) 및 휴식지원 5. (신규) 장애인 가족 건강관리 및 자기관리 지원 6. (신규)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7. (기존 동일)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8. (기존 동일)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9. (기존 동일)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10. (기존 동일)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	의무규정
2	안 제30조의2 (장애인 가족 지원) 제2항, 3항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 ※ (현행법)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	의무규정
3	안 제30조의3 (장애인가족수당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·장애아동수당 등 수급자의 가족에게 장애인 가족수당을 지원하여야 함(가족 중 장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)	의무규정
4	안 제30조의4 (장애인 가족의 국민연금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중 장애인의 돌봄을 위하여 생계를 같이 하며, 국민연금 가입이 중단되었거나 국민연금 가입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30조의5 (경제적 부담 경감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,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·할인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을 지원·조력하기 위하여 장애인 가족의 운임 등을 감면·할인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0조의2 (장애인 가족 지원) 제1항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30조의2 (장애인 가족 지원) 제2항	
3	안 제30조의3 (장애인가족수당)	
4	안 제30조의4 (장애인 가족의 국민연금 지원)	
5	안 제30조의5 (경제적 부담 경감)	

2. 상세 사유

-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과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
 -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은 보호자에 대한 일시적 휴식 지원, 발달재활서비스 제공, 언어발달 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2,544억 7,200만원이 편성됨
 -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중에는 발달장애인 부모·가족에 대한 정보 및 교육 지원, 심리 정서적 상담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며,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54억 400만원이 편성됨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경우,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추가재정

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확대·신설될 사업의 내용과 지원 대상의 범위 및 지원 단가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○ (안 제30조의2제1항) 현 시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·시행할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음

○ (안 제30조의2제2항) 현재 전국에 110개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운영 중인 상황에서 개정안 시행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지원할 비용의 규모와 지원 기준 등을 현 시점에서는 알 수 없음

○ (안 제30조의3) 개정안은 수당의 구체적인 수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, 현 시점에서는 장애인가족수당에 소요될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- 개정안은 장애인을 지원·교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, 경제활동 축소·중단·포기에 따른 소득 수준의 변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

○ (안 제30조의4) 안 제30조의4제2항은 국민연금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, 지원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대상자 수와 지원 단가 등을 알 수 없음

○ (안 제30조의5)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등이 취할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어려움

□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